

2006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

2006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07. 5. 14 ~ 6. 2(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김진석(총괄)
 - 검사위원 : 김시한(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 검사위원 : 김진석(일반·특별회계 세출일반)
 - 검사위원 : 정장용(일반·특별회계 세입일반)
 - 검사위원 : 임준환(일반·특별회계 세출일반)

평창군결산검사위원

2006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평창군수 귀하

2007년 6월 2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로부터 평창군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7년5월14일부터 2007년6월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반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61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8조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 검사기간 : 2007. 5. 14 - 6. 2(20일간)

3. 위원별 검사 분야

- 대표위원 김진석 : 결산총괄
- 위 원 김시한 :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결산
- 위 원 김진석 : 일반·특별회계 세출일반
- 위 원 정장용 : 일반·특별회계 세입일반
- 위 원 임준환 : 일반·특별회계 세출일반

4. 검사방법

-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 실시
- 계수의 과오 여부를 증빙서류와 상호대조 검사

5.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

1) 세입분야

- 결산서와 징수부 대사
-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성
- 체납액 정리 및 미수납액 관리의 적정성
- 결손처분의 적정성
- 여유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이자수입의 증대노력

2) 세출분야

- 결산서와 지출장부의 대사
- 법제, 원칙 등에 입각한 적정한 지출여부
-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적정여부
- 예산전용 및 불용처리의 타당성
- 예비비 운영의 적정성
-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3)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 결산서와 세입징수부, 지출장부 대사
- 주택융자금 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재산 등 재산의 성실한 관리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상태

6. 검사결과 및 의견서 : “별첨” 과 같음.

2007년 6월 2일

대표검사위원 김진석



검사위원 김시한



검사위원 김진석

(인)

검사위원 정장용



검사위원 임준환



2006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목 차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입	7
2) 세출	8
2. 일반회계	
1) 세입	9
2) 세출	9
3. 특별회계	
1) 세입	10
2) 세출	11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12
2) 채권	12
3) 채무	13
4) 공유재산	13
5) 물품	14
5. 세입·세출의현금	14
6. 검사결과	15
7.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18

2006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2006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5)	279,849,327,020	287,747,531,923	282,627,235,597	442,234,300	4,678,062,026
당해년도 (2006)	891,833,339,720	904,160,067,267	882,210,864,067	921,617,630	21,027,588,570

가. 세입결산 개요

- 2006년도 실제수납액 882,210,864,067원은 예산현액의 99 % 수납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7.6%로 나타남.

※ 2005년도

- 실제수납액 : 282,627,235,597원 (예산현액의 101%)
- 징수결정액 : 287,747,531,923원 (예산현액의 103%)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2005)	215,240,879,000	64,608,448,020	279,849,327,020	206,361,609,295
당해년도(2006)	827,828,006,000	64,005,333,720	891,833,339,720	311,726,000,907
익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64,005,333,720	9,482,384,005	76,265,626,302	627,947,016	11,632,345,566
568,446,084,517 (15,686,100,000)	11,661,254,296	570,484,863,160	1,869,711,159	15,855,167,484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0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5% 증가한 827,828,006,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64,005,333,7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91,833,339,720원임.
- 지출액은 311,726,000,907원으로 예산현액의 34.95 %임
이월사업비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은 15,686,100,000원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㉔)	이월사업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⑥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당해연도 (2005)	279,849,327,020	184건 64,005,333,720	90건 29,716,626,140	58건 7,508,581,030	36건 26,780,126,550	22%
당해연도 (2006)	891,833,339,720	247건 568,446,084,517 (15,686,100,000)	133건 541,957,166,720 (15,300,000,000)	81건 10,665,987,747	33건 15,822,930,050 (386,100,000)	64%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 3)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3%에 해당하는 11,661,254,296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855,167,484원으로 예산현액의 1.8%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5)	219,248,448,900	227,103,484,610	222,325,667,334	438,983,640	4,338,833,636
당해연도 (2006)	819,364,557,900	829,292,901,807	808,766,924,427	921,617,630	19,604,359,750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808,766,924,427원으로 예산현액의 98.7%이고
징수결정액은 829,292,901,807원으로 예산현액의 101.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7.5%임.

※ 2005년도

- 실제수납액 : 222,325,667,334원 (예산현액의 101%)
- 징수결정액 : 227,103,484,610원 (예산현액의 104%)

2) 세 출

(단위 : 원)

연도별 / 구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5)	185,493,055,000	33,755,393,900	219,248,448,900	164,409,906,255
당해년도(2006)	771,862,477,000	47,502,080,900	819,364,557,900	257,002,410,107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47,502,080,900	7,336,461,745	57,915,761,079	603,744,666	9,809,935,513
554,828,575,567 (15,000,000,000)	7,533,572,226	551,764,514,320	660,941,569	11,274,997,184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한 수치임.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771,862,47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7,502,080,9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19,364,557,90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206건에 554,828,575,567원으로 예산현액의 67.7%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5)	219,248,448,900	144건 47,502,080,900	81건 26,498,907,110	56건 7,359,747,030	7건 13,643,426,760	21%
당해연도 (2006)	819,364,557,900	206건 554,828,575,567 (15,000,000,000)	123건 536,894,733,650 (15,000,000,000)	77건 9,741,221,047	6건 8,192,620,870	67.7%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한 수치임.

3.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연 도 (2005)	60,600,878,120	60,644,047,313	60,301,568,263	3,250,660	339,228,390
당해연도 (2006)	72,468,781,820	74,867,165,460	73,443,939,640	0	1,423,225,820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73,443,939,640원으로 예산현액의 101.3%이며, 징수결정액은 74,867,165,460원으로 예산현액의 103.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1%임.

※ 2005년도

- 실제수납액 : 60,301,568,263원 (예산현액의 99.5%)
- 징수결정액 : 60,644,047,313원 (예산현액의 100.1%)

2) 세 출

(단위 : 원)

연도별 / 구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5)	29,747,824,000	30,853,054,120	60,600,878,120	41,951,703,040
당해년도(2006)	55,965,529,000	16,503,252,820	72,468,781,820	54,723,590,800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6,503,252,820	2,145,922,260	18,349,865,223	24,202,350	1,822,410,053
13,617,508,950 (686,100,000)	4,127,682,070	18,720,348,840	1,208,769,590	4,580,170,300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한 수치임.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55,965,52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72,468,781,82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 41건에 13,617,508,950원으로 예산현액의 18.8%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 구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5)	60,600,878,120	40건 16,503,252,820	9건 3,217,719,030	2건 148,834,000	29건 13,136,699,790	48.6%
당해연도 (2006)	72,468,781,820	41건 13,617,508,950 (686,100,000)	10건 5,062,433,070 (300,000,000)	4건 924,766,700	27건 7,630,309,180 (386,100,000)	18.8%

※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임

※ 익년도 이월액은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한 수치임.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2005)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6)
		계	수납액	지출액	
계	3,062,561,249	△ 239,240,817	376,537,683	615,778,500	2,823,320,432
재난관리기금	785,818,360	△ 312,911,680	243,681,320	556,593,000	472,906,680
사회복지기금	2,197,950,742	57,491,917	116,677,417	59,185,500	2,255,442,659
식품진흥기금	78,792,147	16,178,946	16,178,946	-	94,971,093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3개로
기금현재액은 2005년도 3,062,561,249원 보다 239,240,817원이 감소된 2,823,320,432원을 관리하고 있음.

2) 채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2005)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6)
합 계	1,375,419,526	194,710,616	447,086,856	1,123,043,286
일반회계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697,747,546	-	165,594,116	532,153,43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주민소득지 원 및 생활안정자금)	677,671,980	194,710,616	281,492,740	590,889,856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2005년말 현재액 1,375,419,526원에서
- 2006년도에 194,710,616원이 발생, 447,086,856원이 소멸되어
-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23,043,286원임.

3) 채 무

(단위 : 원)

회계별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8,818,750,000	△1,994,384,490	-	1,994,384,490	7,019,272,000
일	반 회 계	1,480,842,000	△431,370,000	-	431,370,000	1,049,472,000
특 별 회 계	소 계	7,337,908,000	△1,563,014,490	-	1,563,014,490	5,969,800,000
	상수도사업	7,301,400,000	△1,331,600,000	-	1,331,600,000	5,969,800,000
	주택 사업	36,508,000	△231,414,490	-	231,414,490	

※조정액 : 주택사업특별회계 △194,906,490원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2005년도말 현재액 8,818,750,000원에서
- 2006년도에 1,994,384,490원을 상환하여
- 2006년도말 현재액은 7,019,272,000원임.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용도별	구 분	2005년말현재액	2006년말현재액	증감(△)
		합	계	191,854,187,000
행 정 재 산	계	146,843,463,000	157,570,018,000	10,726,555,000
	공공용재산	123,145,970,000	131,606,748,000	8,460,778,000
	공용 재산	22,383,005,000	24,108,997,000	1,725,992,000
	기업용재산	1,314,488,000	1,854,273,000	539,785,000
보	존 재 산	0	0	0
잡	종 재 산	45,010,726,000	35,660,683,000	△9,350,043,000

가. 2006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2005년말 현재액191,854,187,000원에서
1,376,512,000원이 증가한 193,230,701,000원으로

- 토지 125,662,000m² 174,025,930,000원
- 건물 69,644m² 19,011,076,000원

5) 물 품

(단위 :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06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33종	수량	198	31	-	31	6	7	13	216
	금액	1,541,653	277,684	-	277,684	102,104	30,461	132,565	1,686,772

가. 2006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005년말 현재액 1,541,652,630원보다 145,119,630원이 증가한 1,686,772,260원으로 신규취득 277,684,63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양여, 감가상각 등으로 132,565,000원이 감소함.

5. 세입·세출외 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2006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2,575,105,136	3,725,613,814	21,679,477,245	17,953,863,431	6,300,718,950
부 담 금	-	-	-	-	-
위 탁 금	171,654,642	3,047,838,282	16,028,758,182	12,980,919,900	3,219,492,924
보 증 금	861,843,570	△547,700,530	91,530,400	639,230,930	314,143,040
일시보관금	1,354,415,167	1,224,646,050	3,965,141,244	2,740,495,194	2,579,061,217
잡종금등기타	187,191,757	830,012	1,594,047,419	1,593,217,407	188,021,769

가. 2006년도말 현재액은 6,300,718,950원으로 2005년도말 2,575,105,136원보다 3,725,613,814원이 증가함.

※ 읍·면, 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 포함한 금액임.

6. 검사결과

□ 총 평

2006년도 평창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관련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결산에 대한 의지로 계수과오는 없었으며, 재무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가. 일반회계기준 세입은 전년대비 374% 증가 하였으나, 수해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세입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관련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재정보전금 등의 증액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일반회계 부문에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예산편성까지 하여 놓고 발행하지 않으므로 인해 15,000백만원의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였음.

나. 세출분야에서는 사업비 확보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 예산편성이후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업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 주요 지적사항

가.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 함

- 나. 회계연도 말(12월) 동절기 시작시점에 예산배정을 함으로서 사업시기 촉박 등으로 부득이 예산을 이월시키는 문제점 발생
- 다. 이월사업(명시, 사고)은 최소화되어 회계연도 내 행정목적이 달성되어야 함에도 사업계획의 확정지연이나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관행처럼 매년 반복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함
- 라. 승인된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년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며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됨
- 마.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에 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 하므로 지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바. 소규모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추진이 적기에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읍·면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함에도 군 관련부서에 계상한 후 재배정 추진하는 것은 행정 능률을 저해하고 있음
- 사.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반사업으로 추진함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매년 반복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아.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이나 예측하지 못한 예산 미계상 소규모사업에 집행하여야 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물품구입, 간판제작, 행정재산(건물)취득 및 수리, 강원도행정재산(소방)에 예산집행, 제설기제작, 설계용역 등에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자. 군 금고운영에 있어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의 수입금은 지급하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회계상의 처리에 의하여 수입되므로 수납과 동시에 결정되어야 하고 유휴자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하나 일반회계의 경우 별도계좌로 관리되는 수입금 출납원 명의로 된 2개의 보통예금은 군 금고의 세입세출일계표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사례가 있었음.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차.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의 98.1%가 경리관을 달리 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임에도 환경복지과에서 금고를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 집행시기 및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여유율을 높게 책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공금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추후 최소한의 지출예정액 이외는 환매조건부 채권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

지 적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담당 위원
1	자동차 과태료 징수처분(민원봉사과)	정장용
2	사회단체 행사 통합시행(자치행정과)	김진석
3	2006평창군 금고 검사결과(재무과)	김진석
4	군 금고운영 부적정(재무과)	임준환
5	공유재산특별회계 자금관리 미흡(재무과)	임준환
6	물품(자동차)관리 문제점 및 대책(재무과)	김시한
7	공유재산 대부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재무과)	정장용
8	효석문화마을(생가복원)조성사업(문화관광과)	김진석
9	세출예산 집행잔액 관리 미흡(문화관광과/스포츠사업단)	임준환
10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환경복지과)	김시한
11	사회복지기금(환경복지과)	김시한
12	수질개선특별회계 금고운영 미흡(환경복지과)	임준환
13	환경개선부담금 미압류대상자에 대한 조치(환경복지과)	정장용
14	대관령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재배정 소홀(건설과)	임준환
15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 추진 미흡(지역도시과)	임준환
16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부지 공유재산심의회 미심의(스포츠사업단)	임준환
17	계속비사업 집행 부적정(민원봉사·지역도시·재난안전관리과)	임준환
18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조치 미흡(민원봉사·재무·산림과)	정장용
19	읍·면 재배정사업 부대비 집행 부적정(환경복지·건설·지역도시과)	임준환
20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 부적정(읍·면)	임준환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1

○ 제목 : 자동차 과태료 징수처분

○ 현황

부 과		징 수		징수율(%)	비 고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액(천원)		
29,633	2,974,833	19,991	1,346,266	45	2006년까지

○ 문제점

- ▶ 자동차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없는데다 자동차가 압류 되어도 운행에 지장이 없고 폐차시키거나 매매할 때 과태료 원금만 내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하며, 2003년 이후에는 차령 8~9년 이상 된 노후차량의 경우 잔존가치가 없는 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시 과태료 체납액이 있고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납부를 기피함.
- ▶ 1명의 직원이 과태료 청문·부과·징수·압류·감액결정과 민원인의 항의성 방문에 따른 납부안내, 압류 및 해제촉탁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현재수행하고 있는 통상업무 이상의 체납처분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움.

○ 개선사항

- ▶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가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변경 등록에 대해서는 일정한 등록제한 법제도 규정
- ▶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 ▶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과태료에 대한 납부 기피 심리가 만연하여 체납액이 계속 늘어가고 있음에도 체납규모에 맞는 인력배치 및 조직정비

□ 검사자 의견

- 늘어나는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재무과에 세외수입 부서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번호 : 2
- 제목 : 사회단체 행사 통합시행
- 현황
 - ▶ 단체 수 : 45개 단체, 73개 사업
 - ▶ 지원액 : 총608,130천원(보조 407,000천원, 자부담 201,130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 사회단체별로 행사를 집행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낭비

감사자 의견

- 각 단체별로 실시하던 행사를 시기별 · 일정 · 동원인원을 조정하는 등 대회를 통합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낭비를 최소화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번호 : 3

○ 제목 : 2006 평창군 금고검사 결과

○ 현황

▶ 지방재정법 제79조, 동시행령 106조,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함

○ 문제점(개선사항)

- ▶ 보관 현금이자 및 세입금 지연이체
- ▶ 송금자금 금고예입 지연
- ▶ 국고 가정리계정 이체지연

감사자 의견

○ 현행 수납체계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 금고 및 수납대행점의 영수필 통지서 분류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4

○ 제목 : 군 금고운영 부적정

○ 현황

- ▶ 보조금 수입계좌 최고액 : '06.11.03 415,293백만원
- ▶ '06.01.23 보조금 300백만원, '06.11.23 보조금 48,543백만원 등 85,762백만원 '06.12.29 군금고납입

○ 문제점(개선사항)

- ▶ 보조금, 교부세 등의 수입금은 지급하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회계상의 처리에 의하여 수입되므로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됨.
 - 유희자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하나 별도계좌로 관리되는 2개의 보통예금은 금고 세입세출일계표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함.
 - 징수결정시 수입금 출납원이 대결하는 사례가 있음.

□ 감사자 의견

- 별도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2개의 예금에 대하여 자체감사 후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함.
- 보조금, 교부세 등의 수입금과 금고운영 전담직원 배치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5

○ 제목 : 공유재산특별회계 자금관리 미흡

○ 현황

▶ 2006년 9월말 잔액 8,290백만원, 12월말 잔액 7,774백만원
(월별 잔액현황 따로 붙임)

○ 문제점(개선사항)

▶ 유희자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 이자 수입을 올려야함에도 연이율1%의 금고에 장기간 예치하는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한 실적이 전무함.

□ 감사자 의견

○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따라 최소한의 지출예정액 이외는 환매조건부채권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임.

2006년 공유재산특별회계 월말 잔액 현황

(단위 : 원)

월별	세 입	세 출	잔 액	비 고
1	1,171,170		1,171,170	
2	370,665,270		370,628,420	
3	732,593,650	705,616,400	26,940,400	
4	2,301,182,720	1,866,194,000	434,988,720	
5	2,562,373,470	1,866,194,000	696,179,470	
6	3,054,591,820	1,952,035,800	1,102,556,020	
7	3,877,297,360	1,976,035,800	1,901,261,560	
8	4,000,846,070	1,976,035,800	2,024,810,270	
9	10,266,676,690	1,976,035,800	8,290,639,890	
10	10,552,670,750	1,976,035,800	8,576,634,950	
11	10,615,798,420	3,057,136,270	7,558,662,150	
12	10,833,128,210	3,058,192,270	7,774,935,940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6

○ 제목 : 물품(자동차)관리 문제점 및 대책

○ 현황

▶ 차량 보유대수 72대중 본청 소유대수 20대에 운전기사 6명으로, 특수기사, 군수·부군수 전담기사 3명을 제외한 3명이 차량 17대를 감당해야 함.

○ 문제점(개선사항)

▶ 차량대비 운전원 부족으로 소형(승합, 화물)차를 공무원이 자가운전을 실시하고 있어 차량 성능파악 및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속히 노후화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내구연한이 초과하였다하여 차량상태와 관계없이 교체 구입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함.

□ 검사자 의견

○ 차량운행시 자가운전자 안전운행 및 차량관리 철저를 기하고 기능중복 및 유사업무용 차량은 통합하여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요구됨.

○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하여 무조건 교체하지 말고 차량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체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운전요원을 증원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7

○ 제목 : 공유재산 대부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황

▶ 공유지 대부료

- | | | |
|----------------------|------|-------------|
| - 과년도 미수납액(2005년 이전) | 193건 | 30,011,790원 |
| - 2006년 미수납액 | 68건 | 8,188,990원 |

○ 문제점(개선사항)

- ▶ 대부자의 경우 영세농이 많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음.
- ▶ 대부료 체납시 계약해지를 할 경우 무단점유자의 증가와 더불어 민원발생이 야기되어 계약해지가 힘든 실정임.
- ▶ 읍·면 직원들의 업무과중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있음.
- ▶ 현재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에 위임된 공유재산 대부업무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대부업무에 전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읍·면 직원 보충이 필요할 것임.

□ 감사자 의견

- 현재 읍·면으로 위임된 대부업무는 주민들 편의는 도모하지만,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주민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민원인 편의가 우선이라 판단되며 읍·면 직원들의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번호 : 8
- 제목 : 효석문화마을(생가복원)조성사업
- 현황
 - ▶ 문학마을 탐방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
 - ▶ 2014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문화올림픽의 기본인프라 구축
- 문제점(개선사항)
 - ▶ 부지매입 협의지연
 - ▶ 공동명의 2인중 1명의 행불로 매입협의 지연

검사자 의견

- 토지주 추적한 후 협의 조속 매입
- 2007년도 소요액 확보 조기사업 시행요망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번호 : 9

○ 제목 : 세출예산 집행잔액 관리미흡

○ 현황

▶ 계획변경(취소)잔액 : 448,427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은 추경예산시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정리하여야함에도 미이행

- 문화진흥 100,000천원(도비지원 없음에도 예산계상)

- 국제스포츠 45,000천원(불량건축물정비 자체사업 미실시)

감사자 의견

○ 계획변경(취소)으로 예산잔액발생시 추경예산시 삭감 등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10

○ 제목 :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 현황

▶ 총사업비 89억으로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4년차 동안 46억여 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국비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됨은 물론 물가상승률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임.

○ 문제점(개선사항)

▶ 장기간 공사가 진행됨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책정해야 할 것이며, 본 생태관이 완공되어도 사후 활용계획이 불확실함.

□ 검사자 의견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민물고기 생태관 활용방안이 필요하며, 그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11

○ 제목 : 사회복지기금

○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현재(A)			당 해 년 도					당해연도말잔액(E=A+B)			출연금 출연율 (%)	비고
	계	출연금	이자	계 (B)	수납액(C)			지출액 (D)	계	출연금	이자		
					소계	출연금	이자						
계	1,947,420	1,800,000	147,420	250,530	309,130	250,000	59,130	58,600	2,197,950	2,050,000	147,950	100	
여성 복지	369,430	350,000	19,430	154,575	154,575	150,000	4,575	0	524,005	500,000	24,005	24.4	
노인 복지	914,528	850,000	64,528	93,810	130,810	100,000	30,810	37,000	1,008,338	950,000	58,338	46.3	
장애인 복지	561,185	500,000	61,185	135	20,135	0	20,135	20,000	561,320	500,000	61,320	24.4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102,277	100,000	2,277	2,010	3,610	0	3,610	1,600	104,287	100,000	4,287	4.9	

○ 문제점(개선사항)

- ▶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한 위4대 기금의 총액대비 현황을 보면 일부 기금은 46%를 초과 출연하였으며, 저소득 자녀장학금은 5%에 불과함. 이는 기금운영에 형평성이 결여되었음.

□ 감사자 의견

- 특히, 저소득자녀장학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바, 출연금을 증액하여 보다 다수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그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 호 : 12

○ 제 목 : 수질개선특별회계 금고운영 미흡

○ 현 황

- ▶ 2006년 5월 잔액 20,846백만원(공금잔액13,846백만원, 환매채7,000백만원)
- ▶ 예산액 37,066백만원(환경복지과688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36,378백만원)

○ 문제점(개선사항)

- ▶ 예산액의 98.1%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임에도 환경복지과에서 금고를 운영함에 따라 공금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이 미흡함.

□ 감사자 의견

-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따라 최소한의 지출예정액 이외는 환매조건부채권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임.
-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13
-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미압류대상자에 대한 조치
- 현황
 - ▶ 총부과 95,986건, 총부과금액 3,976,124,710원
 - ▶ 년도별 : 2006년 이전 (72,377건, 3,181,737,920원)
2006년분 (23,609건, 794,386,790원)
- 기 추진상황
 - ▶ 2006년 이전 압류 : 9,708건, 209,063,120원
 - ▶ 2006년분 압류 : 4,067건, 89,636,680원
- 2007년 1기분 : 2007. 6월중 압류처리
 - ※ '07. 1기분 3,834건 독촉장 발송 (납부기한 '07.05.31까지)

□ 검사자 의견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에 대하여 자동차에 압류하고 있으나, 자동차령이 약8년이상 지나서 소유자가 신청하면 압류해제와 관계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하게 되어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폐차전에 압류건을 해제해야만 폐차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되거나
- 폐차하고 신차등록시 종전에 차량압류로 인하여 미납된 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모든 완납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미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 자동차 매매(명의이전)때도 반드시 압류물건이 해제되기 전에는 명의이전을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번 호 : 14

○ 제 목 : 대관령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재배정 소홀

○ 현 황

▶ 대관령 진입로 확·포장공사 150백만원(자체사업)

○ 문제점(개선사항)

▶ 예산이 2회추경('06.10.24)에 확정되었음에도 '06.11.01에 보조사업비로 착오배정 후 12.06에 감배정한 후 12.19에 자체사업비를 배정하는 등 재배정 업무소홀

감사자 의견

○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번 호 : 15

○ 제 목 :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진 미흡

○ 현 황

- ▶ 자체사업 : 200백만원('05명시이월, '06사고이월)
보조사업 : 348백만원('06사고이월)

○ 문제점(개선사항)

- ▶ 2014동계올림픽 실사구간 및 봉평면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이 '06.12말과 '05.12말까지 완료토록 계획후 '07.01.11에 공사중지 및 '06.12.12에 18,486천원만 집행되고 이월되는 등 추진 미흡

감사자 의견

○ 조속히 사업마무리 및 정산 실시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번호 : 16

○ 제목 :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부지 공유재산심의회 미심의

○ 현황

-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13필지 46,231m²
- ▶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결의 : 28필지 51,515m²

○ 문제점(개선사항)

-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재산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임에도 15필지 12,652.9m²는 심의없이 취득절차 이행

검사자 의견

- 재산관리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교육이 필요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번 호 : 17

○ 제 목 : 계속비사업 집행 부적정

○ 현 황

- ▶ 새주소사업 : 1,350백만원('04~'07)
마하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 10,000백만원('05~'08)
군기본·관리계획수립 : 1,521백만원('04~'07)

○ 문제점(개선사항)

- ▶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반사업으로 추진함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매년 반복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함.

감사자 의견

○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검토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번호 : 18

○ 제목 :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조치미흡

○ 현황

▶ 총미수납액	11,698건	2,340,918,140원
정기분	913건	91,086,590원
수시분	10,785건	2,249,831,550원

○ 문제점(개선사항)

- ▶ 기존업무의 부수로 배치되어 업무연찬, 부과대장 관리소홀 및 프로그램 사용미숙
- ▶ 징수부서의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부족

□ 감사자 의견

○ 읍·면 및 실·과·소 세외수입담당자 인사이동 자제

○ 전산 프로그램의 정리

○ 징수부서 및 담당부서의 업무 부여시 세외수입 업무의 높은 비중부여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번 호 : 19

○ 제 목 : 읍·면 재배정 사업 부대비 집행 부적정

○ 현 황

- ▶ 수해쓰레기 처리 9,000천원, 시가지주민불편해소 등 3,000천원,
도·배수로사업 등 2,000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20,000천원,
하천관리 등 156,500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 사업비 예산을 읍·면에 전액 또는 일부를 재배정하여 집행시 사업 부대비를 읍·면에 재배정함이 타당함에도
- ▶ 읍·면에 전액 재배정할 사업부대비의 56%를 군에서 집행하고, 일부 재배정할 사업부대비는 전액 군에서 집행하는 등 부대비 집행이 부적정함.

감사자 의견

○ 사업예산 재배부시 부대비도 동시에 재배부하는 방안 검토시행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번호 : 20

○ 제목 :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 현황

▶ 8개 읍·면 1,600백만원

○ 문제점(개선사항)

▶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 예측하지 못한 예산 미계상 소규모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을 물품구입, 간판제작, 행정재산(건물) 취득 및 수리, 강원도행정재산(소방)에 예산집행, 제설기제작, 설계 용역 등에 사업비를 집행

감사자 의견

○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번호	세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리계획	관련부서
1	자동차 과태료 징수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가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이전·변경등록에 대해서는 일정한 등록제한 법제도 규정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 과태료 체납규모에 맞는 인력배치 및 조직정비 ○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재무과에 세외수입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종 민원(자동차관련 민원, 인·허가, 세무 등)처리시 과태료 체납여부를 확인, 납부촉구 및 경고(관허사업 제한)하여 과태료납부(징수)을 제고 ○ 평창군 조직관리부서에 인력증원 및 조직신설요청(재무과 내에 세외수입담당 조직 신설) ※ 2007년 조직진단시기 의견제시 	민원봉사과
2	사회단체행사 통합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현황 : 45개 단체, 73개 사업 ○ 지원액 : 총608,130천원 (보조 : 407,000천원, 자부담 : 201,130천원) ○ 각 단체별로 실시하던 행사를 시기별·일정·동원인원을 조정하는 등 대회를 통합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낭비를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단체별 행사계획 및 통합의견을 조사한 후, 통합이 필요한 행사는 통합개최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음. 	자치행정과
3	2006평창군 금고 검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 현금이자 및 세입금 지연이체 ○ 송금자금 금고예입 지연 ○ 국고 가정리계정 이체지연 ○ 금고 및 수납대행점의 영수필 통지서 분류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편의 시책 지속개발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이체 납부 및 인터넷 지로 납부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인센티브 개발 - 전화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가칭 HAPPY PAY 시스템 구축활용 	재무과

번호	내 용	주요 지적사항 및 의견	관리계획	관련부서
4	군 금고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세 등의 수입금은 지급하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회계상의 처리에 의하여 수입되므로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됨. - 유휴자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하나 별도계좌로 관리되는 2개의 보통예금은 금고 세입 세출일계표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함. - 징수결정시 수입금 출납원이 대결하는 사례가 있음. ○ 별도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2개의 예금에 대하여 자체감사 후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운영 내실화 및 수익성 극대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마련 →평창군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 - 업무처리 방식 정형화를 통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금고운영 자금 수익성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중인 환매채, CD외 고수익 상품 발굴활용 - 공금운영에 대한 원칙마련 → 공금운영계획수립 및 자금배정 원칙 마련/시행 ○ 별도 2개 계좌에 대한 자체감사 6월중 실시 	재무과 (기획감사실)
5	공유재산특별회계 자금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자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올려야함에도 연이율1%의 금고에 장기간 예치하는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한 실적이 전무함 ○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따라 최소한의 지출예정액 이외는 환매 조건부채권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특별회계 가용재원 총78억여원 중 유휴자금 50억원을 환매채에 2007.05.22 ~ 07.23까지 63일간 예치하였으며, ○ 추후 세입·세출 월별 종합계획서에 따라 최소한의 지출예정액을 제외한 유휴자금은 고이율이 보장되는 환매채나 CD 등에 예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예정임. 	재무과

번호	내 용	진행사항 및 의견	처리계획	관련부서
6	물품(자동차)관리 문제점 및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운행시 자가운전자 안전운행 및 차량관리 철저를 기하고 기능중복 및 유사업무용 차량은 통합하여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요구됨. ○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하여 무조건 교체하지 말고 차량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체가 필요하며, 운전요원 증원도 고려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연한 및 주행거리 초과 차량의 교체 구입 요청시 연간 차량유지비, 차량운행 가능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교체구입 필요성 대두시 교체구입검토. ○ 자가운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차량대비 운전원의 인력부족으로 차량관리가 미흡, 자가운전자들의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인원에 대하여 인력배치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한 인력확보 노력 	재무과
7	공유재산 대부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자의 경우 영세농의 어려운 사람이 많으며, 대부료 체납시 계약해지를 할 경우 무단점유자의 증가와 더불어 민원 발생이 야기되어 계약해지가 어려움. ○ 현재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에 위임된 공유재산 대부업무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대부업무에 전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읍·면 직원 보충이 필요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무의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과 내 특별징수반 운영 등 체납액 징수 및 무단점유자 등을 색출하여 대부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 인력 확충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재무과

번호	내 용	기 적 사 항 및 이 전	사 리 계 획	관 련 부 서
8	효석문화마을(생가복원)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 지연 ○ 공동명의 2인중 1명의 행불로 매입협의 지연 ○ 토지주 추적 후 조속한 협의/매입 ○ 2007년도 소요액 확보 조기사업 시행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평면 창동리 433번지(전) 922㎡의 토지 매입은 소유자인 김원형(성남거주), 김일영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김일영은 행불(사실상 사망추정)로 사법기관에 실종신고를 거쳐 법원판결(사망처리)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실상 토지 매입이 불가 ○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9억원중 15억(국10,군5)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고, 2007년도 1차 사업인 효석생가, 푸른집 1동 등을 완료하고 2008년도 사업은 강원도비 지원요청 등 사업비 14억원 확보후 사업 시행 계획 	문화관광과
9	세출예산 집행잔액 관리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변경(취소)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은 추경예산시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정리하여야함에도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진흥 100,000천원 - 국제스포츠 45,000천원 ○ 계획변경(취소)으로 예산잔액발생시 추경예산시 삭감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스포츠45,000천원은 IOC현지실사대비 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건으로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보조사업비가 추가편성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됨. ○ 차후에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으로 예산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계획 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로 예산잔액 발생시 추경예산시 삭감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추진 하겠음. 	문화관광과 / 스포츠 사업단

번호	내 용	진행사항 및 의견	처리계획	관련부서
10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89억으로 시작하여 4년차 동안 46억여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으나 국비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공사 지연됨은 물론 물가상승률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임. ○ 생태관이 완공 후 활용방안과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후관리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89억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부분이며 2008년 상반기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없음 ○ 향후 활용방안은 백룡동굴 등 마하 생태 관광지로 조성계획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본 생태관과 연계된 생태관광벨트를 구상하고 있음 	환경복지과
11	사회복지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한 4대 기금 중 일부기금은 46%를 초과 출연하였으며, 저소득 자녀장학금은 5%에 불과함. 이는 기금운영에 형평성이 결여되었음 ○ 출연금을 증액하여 보다 다수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저소득 자녀가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틀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복지과-17309(2007.05.03)호와 관련하여 5억원의 추가 출연기금 조성 계획 추진중에 있음. 	환경복지과

번호	제 목	지정사항 및 의견	처리 계획	관련부서
12	수질개선특별회계 금고운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따라 최소한의 지출예정액이외는 환매조건부채권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임 ○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계획서에 따라 최소한의 지출예정액이외는 환매조건부채권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겠음 ○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의 이관여부는 조직개편 시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하는 중임 	환경복지과
13	환경개선부담금 미압류대상자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자동차에 압류하고 있으나 자동차 차령이 약 8년 이상 지나서 소유자가 신청하면 압류해제와 관계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하게 되어있어 폐차 전에 압류건을 해제해야만 폐차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폐차하고 신차 등록시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모든 완납영수증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미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 자동차 매매(명의이전)시 반드시 압류해제되기 전에는 명의이전을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매분기별 압류처리하고 있으며, 차령초과로 자진말소 된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압류처리하고 있음. ○ 2007년 1분기 미납자에 대하여 6월중 압류처리 할 계획임 	환경복지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리계획	관련부서
14	대관령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재배정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 150백만원(자체사업) ○ 예산이 2회 추경('06.10.24)에 확정되었음에도 '06.11.1에 보조사업비로 착오 배정 후 12.06에 감배정한 후 12.19에 자체사업비를 배정하는 등 재배정 업무 소홀 ○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토록 하겠음. 	건설과
15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 추진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동계올림픽 실사구간 및 봉평면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06.12말과 '05.12말까지 완료토록 계획후 '07.01.11에 공사중지 및 '06.12.12에 18,486천원만 집행되고 이월되는 등 추진 미흡 ○ 조속히 사업마무리 및 정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보완 후 2007.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 	지역도시과
16	평창종합스포츠타운 구성부지 공유재산심의회 미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재산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임에도 15필지 12,652.9m²는 심의없이 취득절차 이행 ○ 재산관리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교육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타운 부지매입비는 2005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써 설계용역결과에 따라 일부 부지가 추가 편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필요시 매입이 가능하도록 예산 일부 취득절차를 선행해 놓은 사항이며, -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지속적인 업무연찬실시 	스포츠 사업단

번호	세 목	지시사항 및 의견	처리 계획	관련부서
17	계속비사업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사업으로 추진함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매년 반복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함. - 새주소사업 : 1,350백만원('04~'07) - 마하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 10,000백만원('05~'08) - 군기본·관리계획수립 : 1,521백만원('04~'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기본·관리계획의 경우 관련법(재해대책법) 등의 개정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잔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 향후 예산편성요구시, 사전에 당해 사업이 계속비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여 부적절한 예산편성 방지도록 하겠음. 	민원봉사과 / 지역도시과 / 재난안전 관리과
18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조치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미수납액 11,698건 2,340,918,140원 ○ 업무연찬, 부과대장 관리소홀 및 프로그램 사용미흡 ○ 징수부서의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부족 ○ 전산프로그램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부과자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료를 부과자료와 대사하여 이중 부과된 부분은 감액 ○ 징수 불가능 체납액 적극적인 결손처분 단행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적극 운영 	민원봉사과 / 재무과 / 산림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리 계획	관련부서
19	읍·면 재배정사업 부대비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예산을 읍·면에 전액 또는 일부를 재배정하여 집행시 사업 부대비를 읍·면에 재배정함이 타당함에도 읍·면에 전액 재배정할 시 부대비의 56%를 군에서 집행하고, 일부 재배정할 사업 부대비는 전액 군에서 집행하는 등 부대비 집행이 부적정함. ○ 사업예산 재배부시 부대비도 동시에 재배부하는 방안 검토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에 사업예산을 재배정할 시에는 부대비도 적절히 재배정되도록 하겠음. 	환경복지과 / 건설과 / 지역도시과
20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 예측하지 못한 예산 미계상 소규모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을 물품구입, 간판제작, 행정재산(건물)취득 및 수리, 강원도 행정재산(소방)에 예산집행, 제설기 제작, 설계용역 등에 사업비를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의 업무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취득 및 수리(수선) 등의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 경상경비위주의 예산편성에 따라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 불가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예산의 목적에 따라 주민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할 것임. 	읍·면